

「2026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1차 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본 기금운용 1차 변경계획안은 2026년 3월 3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3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임.

I. 제안이유

2026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1차 변경계획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수립하고 평창군의회 심의의결을 받으려 하는 것임.

II. 주요내용

가. 평창군체육진흥기금

기금의 여유자금을 체육지원 사업비로 편성하여 대회 유치 및 개최를 통한 평창군 체육발전을 도모하고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나. 평창군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 목표액 초과 달성에 따라 평창군 옥외광고 발전을 위한 기금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다. 기금운용변경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천원]

기 금 명	계획액	기정계획액	비교증감
합 계(8건)	34,681,886	34,570,119	111,767
평창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14,273,749	14,273,749	-
평 창 군 자 활 기 금	544,973	544,973	-
평 창 군 고 향 사 랑 기 금	1,450,407	1,450,407	-
평 창 군 체 육 진 흥 기 금	2,454,867	2,342,426	112,441
평창군옥외광고발전기금	274,358	275,032	△674
평 창 군 재 난 관 리 기 금	2,266,336	2,266,336	-
평 창 군 식 품 진 흥 기 금	134,637	134,637	-
평창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13,282,559	13,282,559	-

Ⅲ. 기금변경 개요

□ 변경기금 조성규모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과 개별법에 따라
설치 및 관리·운용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개기금으로
2025년도 말 기금조성 계획액은 기정대비 795백만원이 감소한 29,637백만원임.

[단위:천원]

기 금 명	2025년도말 조성액(a)	2026년 운용계획		2026년도말 조성액 ①=(a)+②-③	당초대비 증 감
		수입 ②	지출 ③		
합 계(8건)	30,431,466	4,250,420	5,045,232	29,636,654	△794,81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3,957,275	316,474	0	14,273,749	316,474
통합계정	81,164	1,836	0	83,000	1,836
재정안정화계정	13,876,111	314,638	0	14,190,749	314,638
평창군자활기금	530,831	14,142	29,000	515,973	△14,858
평창군고향사랑기금	1,148,407	302,000	1,105,000	345,407	△803,000
평창군체육진흥기금	1,910,337	544,530	99,000	2,355,867	445,530
평창군옥외광고발전기금	249,364	24,994	230,000	44,358	△205,006
평창군재난관리기금	1,738,600	527,736	900,000	1,366,336	△372,264
평창군식품진흥기금	110,056	24,581	25,746	108,891	△1,165
평창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10,786,596	2,495,963	2,656,486	10,626,073	△160,523

※ 자료근거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Ⅳ. 검토결과

가. 기금운용 변경계획(총괄)

- 수입·지출계획은 기정액 대비 112백만원 증액된 총 34,682백만원이며
 - 수입은 평창군체육진흥기금에서 예치금회수로 112백만원 증가,
평창군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예치금회수에서 674천원 감소하였음.
 - 지출은 평창군체육진흥기금에서 예치금과 비용자성 사업비에 증액
편성하고, 평창군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는 예치금을 감액하여
비용자성사업으로 편성하였음.

<기금운용 변경내역>

[단위:천원]

구 분	계획액		기 정 계획액		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34,681,886	100.00%	34,570,119	100.00%	111,767	0.32%
평창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14,273,749	41.29%	14,273,749	41.29%	0	0%
평 창 군 자 활 기 금	544,973	1.57%	544,973	1.57%	0	0%
평 창 군 고 향 사 랑 기 금	1,450,407	4.18%	1,450,407	4.20%	0	0%
평 창 군 체 육 진 흥 기 금	2,454,867	7.08%	2,342,426	6.78%	112,441	4.80%
평창군육외광고발전기금	274,358	0.79%	275,032	0.79%	△674	△0.25%
평 창 군 재 난 관 리 기 금	2,266,336	6.53%	2,266,336	6.56%	0	0%
평 창 군 식 품 진 흥 기 금	134,637	0.39%	134,637	0.39%	0	0%
평창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13,282,559	38.39%	13,282,559	38.42%	0	0%

나. 기금별 변경내역

□ 평창군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올림픽체육과)

○ 수입·지출계획은 2,455백만원으로 기정 대비 112백만원 증가

- ▶ 수입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112백만원 증가
- ▶ 지출은 비용자성 사업비인 “HAPPY700평창 강원특별자치도 파크골프 대회”에 17백만원, “평창군수배 유소년 야구대회”에 30백만원, “제27회 강원특별자치도민 달리기대회”에 17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에 4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평창군체육진흥기금 자금운용계획>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2,454,867	2,342,426	112,441	합 계	2,454,867	2,342,426	112,441
전 입 금	500,000	500,000	0	비용자성 사업비	99,000	35,000	64,000
예 치 금 수 회	1,910,337	1,797,896	112,441	예 치 금	2,355,867	2,307,426	48,441
이자수입	44,530	44,530	0				

□ 평창군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도시과)

○ 수입·지출계획은 274백만원으로 기정대비 674천원 감소

▶ 수입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674천원 감소

▶ 지출은 예치금 230백만원을 감액하여 비용자성 사업비인

“친환경 현수막 제작지원”에 30백만원, “디지털 전자 게시대 설치”에 200백만원을 편성하였음.

<평창군옥외광고발전기금 자금운용계획>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274,358	275,032	△674	합 계	274,358	275,032	674
예 치 금 수 회	249,364	250,038	△674	비용자성 사업비	230,000	0	230,000
이자수입	994	994	0	예 치 금	44,358	275,032	△230,674
기타수입	24,000	24,000	0			0	

다.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운용계획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는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금회 제출된 평창군체육진흥기금과 평창군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비용자성 사업비가 각각 64백만원(182.8%), 230백만원(신규 편성) 증액되어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는 변경에 해당하므로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평창군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증가분을 재원으로 하여 HAPPY700평창 강원특별자치도 파크골프대회, 평창군수배 유소년 야구대회, 강원특별자치도민 달리기대회에 사업을 편성하고 일부는 예치금으로 적립하는 등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운용계획을 조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 평창군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예치금을 감액하여 친환경 현수막 제작지원, 디지털 전자 게시대 설치 사업에 재원을 활용하도록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최초 기금 당시 목표액인 200백만원을 초과 달성함에 따라 확보된 재원을 사업비로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옥외광고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기금 조성의 목적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번 기금운용 1차 변경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전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한 예치금 규모의 조정과 기금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1)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배분에 따른 것으로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향후에도 기금 조성 규모와 사업 집행간의 균형을 고려한 계획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는 바입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9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 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